

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 원 철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 지원 및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에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다만,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.
-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주체입니다.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법과 개별법 상의 차별적 세제 지원과 시세감면 조례상 실질적 세제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.
-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區稅인 등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市稅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國稅에 대한 차별해소와 일반협동조합의 제도개선을 견인코자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